THE TASTE OF KOREA
HANSIK

2021년도
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안내

2021. 6.

한 식 진 흥 원
사 업 2 팀

Ⅰ.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한식교육 프로그램 다원화 및 한식 교육기관의 전문 기능강화를 통한 한식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

- 한식 분야에 최적화된 교육커리큘럼을 발굴·지원하여 전공자 및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안정성 확보
- 전문적이고 다원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분야 종사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취·창업 기회제공 및 활성화

* 한식진흥법 제11조(전문인력의 양성)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한식의 확산)제1항제3호 의거

□ 사업기간 : 지원 협약 체결일 ~ '21. 11. 26(금)

○ (교육기간) 협약일 ~ '21. 11. 19(금)

* 교육기간은 사업기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,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등은 총 40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
□ 지원예산 : 총 240,000,000원(기관별 차등 지원)

○ 고등교육기관 및 특성화고 : 최대 24백만원, 8개 기관 지원 예정

○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한식 관련 학원 : 최대 12백만원, 4개 기관 지원 예정

※ 지원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

□ 추진절차

○ 교육기관 공개모집 후 정량·정성 평가기준에 의해 총 14개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

추진계획수립 (6월) ⇨ 홍보 및 교육기관 모집(6월) ⇨ 제안서 평가 (6월) ⇨ 기술협상 및 기관실사(7월)

⇨ 업무협약 (7월) ⇨ 교육프로그램 운영 (8-11월) ⇨ 정산 및 결과보고(12월) ⇨ 사후관리 ('22. 2월, 8월)

Ⅱ. 지원요건

□ 지원대상

○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(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)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,

- '한식분야 교육과정'의 운영을 필수기능으로 하며 한식 및 관련 분야(외식, 조리, 식품, 음식관광)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기관
- '한식분야의 취·창업 교육'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기관

< 한식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기관 및 단체 >

대상기관	필수기능	관련법령
학교 (대학, 대학교, 특성화고 등)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	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
연구기관	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수행	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 •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•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공공기관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	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비영리법인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	•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	•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
학원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	•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평생교육기관	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	•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

□ 지원 프로그램

○ 한식분야 취·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통 한식 및 한식산업 분야의 가치증진 구현

- 취·창업 컨설팅, 조리 이론·실습 교육, 멘토-멘티 프로그램, 해외 취업 준비과정, 취업약정제(산-학연계), 예비 창업자 교육 등
- 전통병과, 지역음식, 궁중음식, 전통주 등 한식의 전통에 대한 이해, 국산식재료 및 장류(소스 등)를 활용한 한식메뉴 개발 등

□ 교육대상

○ 한식분야에 취·창업을 희망하는 한식 및 관련학과*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, 학원, 평생교육기관 등의 일반인 등

* 관련학과(호텔 및 외식조리·경영학과, 식품·영양학과 등)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포함

□ 지원내용

○ 한식 및 관련 전공자, 한식분야 취·창업 희망자의 현업 업무역량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

- 기관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비, 실습·재료비, 체험비 등 지원(지원예산 80%, 자부담 20%)
- 고등교육기관 및 특성화고는 최대 24백만원, 8개 기관 지원 예정
- 연구기관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한식 관련 학원은 최대 12백만원, 4개 기관 지원 예정

* 지원기관 수는 사업예산 및 지원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

□ 지원방법

○ 사업심사를 통해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을 선정 및 개별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원가정산에 의한 경비지원

-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, 실습비, 체험비 등 지원

Ⅲ. 교육기관 선정계획

□ 선정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

○ (**선정절차**) 제안서접수 → 서류평가 → 발표평가 → 기관선정(실사 및 기술협상) → 협약

○ (**평가점수 산정**) 정량평가(진흥원) 및 정성평가(평가위원회) 점수 산출 결과 80점(100점 만점)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

- 가점을 반영한 최종점수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등 8곳, 그 외 기관 4곳을 선정(고등교육기관과 그 외 기관을 구분하여 심사)

□ 대상기관 선정기준

○ 서류평가,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하며, 교육계획서는 내/외부 전문가 6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

○ 교육계획서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(환산 점수 100점 기준) 획득한 프로그램 제시기관을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

* 선정 기준인 80점 이상인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

○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지원기관을 선정하며, 협상을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

- 동점자 발생 시, 한식관련 학과·전공 보유 고등교육기관 우선선발

- 우선순위 대상기관과 협상 불성립 시, 차순위 기관과 협상 실시

○ 협상대상기관이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예산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, 협상의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

○ 공모신청 미달 또는 대상 기관과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할 수 있음

○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관 및 지정 교육 프로그램의 제시기관은 차등 가점 부여

<지원대상 선정시 가점부여>

※ 아래 가점부여 조건 중 중복되는 경우 배점이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

▶ 한식 전문인력 양성 지정제 신청기관 중 서류·현장심사 결과 적합기관(10점)

▶ 산-학 연관사업의 진행 또는 추진프로그램 운영 기관(3점)

□ 선정심의

○ (**심의방법**) 「평가 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운영 교육기관 선정

○ (**심의일정**)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6월 말(예정)

* 심의방법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○ 정량(30%) 및 정성평가(70%)로 구성한 기술능력평가 진행

구 분		평 가 항 목		배점
기술능력평가	정량평가	**취·창업실적**	최근 3년간 졸업생 취·창업 실적	10
		인력보유	강사 전문인력(조교수 이상 또는 전담인력) 보유 현황	10
		시설현황	시설 및 설비 현황	10
		소계		**30**
	정성평가	**전문성**	최근 3년간 한식관련 강좌구성 및 취·창업 분야 전문성	20
		타당성	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타당성	10
		효과성	취・창업지원 사업으로서의 효과성	10
		적정성	추진일정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	10
		참신성	독특한 아이디어의 고유성	10
		기여도	한식진흥 기여 정도, 활용가치, 기대효과 등	10
		소계		**70**
합 계				**100**

□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(30점)

○ (**취·창업 실적**)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창업 평균 실적률(정량, 10점)

구 분	A	B	C	D
	80% 이상	60% 이상 ~80% 미만	40% 이상 ~60% 미만	40% 미만
점 수	10	8	6	4

○ (**인력보유**) 강사인력(조교수 이상 또는 전담인력) 보유 현황(정량, 10점)

구 분		A	B	C	D
		4명 이상	3명	2명	1명 이하
점 수	고등교육기관, 특성화고	10	8	6	4
	그 외 기관	-	10	8	6

○ (**시설현황**)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현황(정량, 10점)

- 보유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교육기관 실사를 통해 사실유무 확인하며 거짓으로 판명될 시 협약 미체결

구 분		강의실	실습실	화장실	소방시설*
		30㎡ 이상	60㎡ 이상	남녀 구분	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 모두 보유
점 수	보유	4	4	1	1
	미보유	0	0	0	0

*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1] 근거

□ 정성평가 분야 평가기준

○ 정성 평가항목(6가지)의 충족정도에 따라 4단계 평가

구 분		A	B	C	D
		충분히 만족 (90% 이상)	상당 수준 만족 (80% 이상)	일정 수준 만족 (60% 이상)	불만족, 보완 필요 (60% 미만)
점 수	20점	20	16	12	8
	10점	10	8	6	4

* 정성평가 항목 중 전문성(배점 20점), 타당성, 효과성, 적정성, 참신성, 기여도(배점 10점)

Ⅳ. 신청 방법 및 작성안내

□ 신청방법

○ (**신청방법**) 온라인 이메일 제출(dhkim@hansik.or.kr)

○ (**접수기간**) '21. 6. 9(수) ~ 6. 25(금) 15:00까지

○ (**문의처**) 한식진흥원 사업2팀 김도형 주임(02-6300-2059)

□ 제출서류

○ 지원신청서 1부

○ 교육계획서 1부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프로그램 당 원본 1부)

* 수강생들의 취창업 현황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 포함

○ 기타 교육실적 증빙서류 1부(해당기관 제출)

□ 공모신청서 작성요령

○ 기본사항, 사업비, 과제요약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

○ 1페이지 이내로 작성

○ 신청인 서명 필수

□ 운영계획서 작성요령

○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,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

○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항목의 제목 아래 "해당사항 없음" 기재

○ 운영 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

○ 참여인력 총괄표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부 인력 기재

○ 교육장소 및 시설현황 내역 및 증빙사진은 필수 기재

○ 프로그램 운영(안)은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

※ 교육시간은 프로그램 당 총 40시간 이상, 교육인원은 20명 이상 양성 필수

○ 참여예정 교육생 현황은 교육대상에 따라(재학생 대상 교육, 일반인 대상 교육) 양식을 택1하여 작성

※ 재학생 및 일반인 모두 교육대상으로 할 경우,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

○ 교육생 선발 계획은 상세히 작성

○ 교육성과는 ① 수강생 취·창업률 ② 한식메뉴 개발 ③ 만족도 조사 등 3가지 지표를 활용하고,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지표 개발하여 활용 가능

- 상기의 교육성과 지표는 사업계획서에 기술하며, ①, ③ 지표는 필수지표로 하며, ② 지표는 해당 교육기관에 한함
- 해당 성과지표는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
- 성과지표 목표치(취창업률)는 아래 산출공식을 참고하여 작성

<참고> 취창업률 조사

$$\text{취업률}(\%) = \frac{\text{취업자}^{*}}{\text{졸업자} - (\text{진학자+입대자+취업불가능자+외국인유학생+제외인정자})} \times 100$$

* 취업자 : 건강보험 직장가입자+교내취업자+교내취업자TLO+해외취업자+농림어업종사자+개인창작활동조사자+1인 창(사)업자+프리랜서

○ 소요예산 작성 내, 내부인력의 경우 타 사업 참여중일 경우 본 사업의 참여율과의 합이 100%를 넘을 수 없음

○ 유사실적, 주요경력, 이력사항 등 증빙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포트폴리오 등의 서류는 별첨하여 동봉

Ⅳ. 운영관리 방안

□ 사업비 지급

○ (**선금**) 협약체결 후 교육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비의 50% 지급

- 공문, 선금 지급신청서 및 사용명세서, 이행(선금)보증보험 증권,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

* 우리원 사업운영 요령 제34조(사업비지급)를 근거로 하되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변경가능

○ (**잔금**) 교육 결과보고서 후 검수 완료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

□ 사업비 관리

○ 사업비는 교육기관 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 및 집행

-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%* 범위 이내에서 일반관리비 인정

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개정 '19.9.17) 제8조 제1항 근거

○ 교육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

○ 사업비는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

○ 사업비 사용기준은 「한식진흥원 사업운영요령」('20.12)을 따르며, 세부 조율이 필요한 항목은 기술협상 시에 진행

○ 예산 항목 간 변경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변경 승인을 득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

○ 본 사업은 사전 사업비 적정성 판단 후 사후 자체정산을 적용함

□ 현장점검

○ (**교육 전**) 필요 시, 시설·설비현황을 현장점검하며,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(**교육 중**) 협약기간 중 불시에 현장점검 실시하여 교육의 사전 준비사항, 교육 진행사항 등을 점검 할 수 있음

* 강의전 준비, 강사진 충실도, 교육생 수강태도, 강의실·실습실 위생과 설비 상태 등 전체적인 진행상황 파악

□ 사후관리

○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는 진흥원 양식을 기반으로 실시하며, 결과보고 시 조사결과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고

○ 교육종료 후 수료생에 대한 신규 활동성과 내역(취·창업률* 등) 조사 ('22년 2월, 8월 총 2회)

* '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조사' 취업률(교육부) 산출공식을 따름

□ 의무 및 유의사항

○ (**의무사항**) 교육시간 및 교육인원, 사업운영 변경, 교육대상 등

- 프로그램 당 총 40시간 이상 교육 및 교육 인원 20명 이상 양성

  * 교육결과 교육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교육인원에 비례하여 사업비 정산

-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인력현황 및 사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사전 승인 요청하여야 함

- 사업 운영 설명회·간담회 개최 시, 참여 필수

  * Covid-19의 지속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개최 등 변경 가능

○ (**유의사항**) 동일 프로그램으로 진흥원 외 정부보조금 수혜 불가